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행정처분 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아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당사자(자격취득자)			종목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박다민	89*****	경상북도 경산시 (이하생략)	조정기사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이가림	89*****	대구광역시 (이하생략)			

2.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3.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 본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051-660-10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